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: 2020. 7. 1.

발 의 자:김승남·조오섭·이상직

서동용 • 윤재갑 • 임호선

황운하 • 홍성국 • 고영인

신정훈 · 윤미향 · 김경만

이용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(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)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·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·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·개발·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,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연구・개발・보급"을 "연구・개발"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친환경농어업 자재 사용 활성화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제13조(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) ① (생 략) 개발 및 보급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 ----연구·개발 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·개발 ·보급하거나 교육·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 설> 제13조의2(친환경농어업 자재 사 용 활성화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 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활성화 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농어업 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